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2
----------	-----

제출년월일 : 2015년 6월 1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정이유

가.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이하 응시수수료)는 1991년 10월 24일에 제정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비용 상승 등으로 응시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시험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응시자에게 부담이 가지 아니 하는 한도에서 응시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내용으로 응시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시자 1인당 “20,000원”을 “30,000원”으로 변경(안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제21조(응시수수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15. 4. 2. ~ 4. 22.)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3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 평가 : 원안 동의
 - 성별영향 분석 평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5513 호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000원” 을 “30,000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 교육 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자는 1인당 <u>20,000원</u>의 응시수 수료를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응 시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 법으로 낼 수 있다.</p>	<p>제2조(응시수수료)----- ----- -----<u>30,000원</u>----- ----- ----- -----.</p>

【별첨 2】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응시수수료를 인상조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에 해당되기에 비용추계 해당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행정7급 김종훈 (02-3999-499)

【별첨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의 건 없 음	

【별첨 4】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9조제2항 관련)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평가담당	감사관	(행정6급)	김도연
입안주무부서	중등교육과	통보일	2015.04.13.
관련조문	평가결과		조치사항
제2조(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개정(안)이 전국 사·도 교육청 및 민간 시험 등과 비교 시 높지 않은 수준이고, 소비자 물가 지수 고려 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공·사립 동시 지원 선발제 운영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채용 응시수수료를 고려한 것으로 응시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지 않을 감안하여 “원안동의” 함		원안과 같이 추진하시기 바람

【별첨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서울교육009
법령명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부서	부서명 중등교육과
	담당자명/전화번호 김종훈 / 02)399-9499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4월 8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조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됨
종합 검토 의견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조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됨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4월 9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책 임 관</p> <p style="text-align: right;">담당자 / 연락처 : 박수정 / 02)399-9307</p>	

【별첨 6】

관계법규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시행 2014.8.8.] [교육부령 제44호, 2014.8.8., 일부개정]

제21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생략)